

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
오·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
(보건소 의약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40호
- 나. 제출자 :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0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0. 7.

2. 제안이유

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아동·청소년을 위한 보호조치(안 제4조)
- 라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마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실태조사(안 제6조)
- 바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(안 제7조)
- 사.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4. 관계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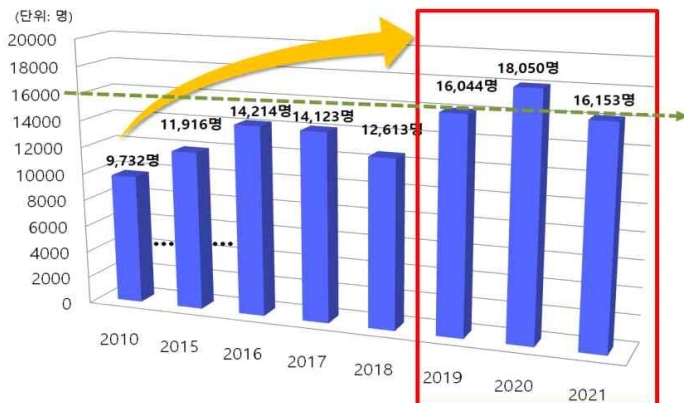
가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① 제정 배경

- 본 조례안은 최근 들어 주요 사회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·남용에 대하여, 사회의 안전과 국민건강의 위험 요인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적극적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- 2021년 마약류사범은 16,153명으로 전년 대비 10.5% 감소하였으나, 3년 연속 16,000명 상회, 대마 사범은 3,77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, 2021년 밀수사범은 807명이며,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역대 최다인 1,295.7kg으로 전년(320.9kg) 대비 303.8% 증가함.¹⁾

【마약류사범 적발 추이】



【밀수사범 적발 추이】



1) 대검찰청 보도자료(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/ 2022.05.06.)

2 주요 제정 내용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“마약류”와 “약물”에 대해 정의함.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“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에서는 특히 아동·청소년의 마약 및 약물 오·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에 대해 규정함.
- 안 제5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안 제6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관련기관·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.
-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위탁과 필요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.
- 안 제9조에서는 경찰서, 사법기관,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의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.

③ 종합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·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음.
- 특히, 최근 들어 마약류 사범이 한해 1만명 이상 검거되고, 시중에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,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건이 계속 보도되는 상황으로 볼 때, 이번 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하게 발의 되었다고 판단됨.
- 또한,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알콜, 담배, 흡입체 등의 약물까지 총제적으로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조례에 나열된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.

붙임 : 관계 법령 1부. 끝.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8. 17.] [법률 제18443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제2조의2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,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6. 7.]

[제3조의2에서 이동 <2011. 6. 7.>]